

의안번호	제 21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6월 24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
----------	-----

발의연월일 : 2019년 6월 24일

발 의 자 : 이상식·박문희·박우양·임영은·
이상정·하유정·송미애 의원(7인)

1. 제안 이유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위탁 규정, 필요시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정의 등 신설(안 제2조, 안 제6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위탁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의 보고 또는 업무의 확인·검사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와 협의완료

7. 입법예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산업·소프트웨어산업·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4. “첨단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9. “연구개발사업”이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제6조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 및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유치 및 육성 관련사업
6.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지원 관련사업

제6조제7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제반 시설·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비에는 진흥원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사업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산업·소프트웨어산업·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식산업”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p> <p>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p> <p>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p>	<p>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p>
<p>4. “첨단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p>	<p>4. “첨단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p>
<p><신 설></p>	<p>5.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신 설></p>	<p>6.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신 설></p>	<p>7.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8.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p>
<p><신설></p>	<p>9. “연구개발사업”이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p>
<p><신설></p>	<p>1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제6조(사업)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5. <u>정보통신 및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유치 및 육성 관련사업</u></p>
<p><신설></p>	<p>6. <u>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지원 관련 사업</u></p>
<p>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 사업</p>	<p>7. (현행 5호와 같음)</p>
<p>6. 중앙정부, 충청북도에서 위탁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 육성 사업</p>	<p>8. (현행 6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7. <u>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업무</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삭 제></u></p> <p>9. <u>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u>제8조의2(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제반 시설·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u></p> <p><u>③ 제2항의 경비에는 진흥원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사업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u>제11조의2(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관계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전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전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